

제24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6.24.)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제출자 : 2020. 5. 29./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20. 6. 3.
- 상정일자 :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6.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강국희 재무과장, 김진태 수도사업소장, 이은주 기획예산담당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른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을 의결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세입·세출 결산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A)	세 출 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A-B)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 속 비 이 월	보 조 금 반 납 금	순 세 계 잉 여 금
계	879,262	673,600	205,662	55,058	32,940	17,437	6,752	93,475
일반회계	799,845	631,700	168,145	51,738	31,317	14,967	5,403	64,720
특별회계	79,417	41,900	37,517	3,320	1,623	2,470	1,349	28,755

○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 총괄은

- 수납액은 879,262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673,600백만원으로
- 결산상 잉여금은 205,662백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은 55,058백만원이며,
- 사고이월은 32,940백만원이고
- 계속비이월은 17,437백만원으로,
- 보조금 집행잔액은 6,75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 순세계 잉여금은 93,475백만원임.

2)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계	860,087	883,311	879,262	326	3,723	102.2	99.5
일반회계	782,118	803,333	799,845	326	3,162	102.3	99.6
특별회계	77,969	79,978	79,417		561	101.9	99.3

○ 2019년도 실제 수납액은 879,262백만원으로서

- 징수결정액 대비 99.5%이며,
- 미수납액 3,723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5%임.

3)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보조금 반납액 (F)	집행잔액 G=C-D-E-F
계	755,661	104,426	860,087	673,600	105,556	5,569	75,362
일반회계	683,358	98,760	782,118	631,700	98,142	4,221	48,055
특별회계	72,303	5,666	77,969	41,900	7,414	1,348	27,307

○ 2019년도 총지출액은 673,600백만원으로서

- 예산현액 860,087백만원 대비 78.3%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105,556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2.3%이며
- 집행잔액 75,362백만원은 예산현액의 8.8%임.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

이 용(일반회계) : 해당사항 없음

전 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 용 금 액		비 고
		감 액	증 액	
16건	3,557	1,384	1,384	

이 체(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체 금 액		비 고
	감 액	증 액	
283건	98,449	98,449	

심 사 의 견

□ 전 용(일반회계)

- 예산 집행은 당초 예산 편성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여건 변화, 사업의 일부변경 등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경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에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거창관광 홍보, 재해구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 슬레이트 지붕개량지원, 도시재생사업,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활동,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전용한 것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용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이 체(일반회계)

-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조직의 최종구성 단위인 담당을 신설·변경·통합·폐지하고 분장 사무를 현실에 맞게 변경·조정하기 위한 「거창군의 세부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2018.12.26. 훈령 제426호)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이체 승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5) 계속비 결산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당 해 연 도 집 행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합 계	25,789	10,762	16,596	53
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	1,657	118	1,539	0
거창 향노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3,002	1,074	1,928	0
덧시골 폭포 등산로 연결사업	843	825	0	18
거창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756	644	112	0
기초생활인프라(소규모 용수개발)	864	821	8	35
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지구)	692	596	96	0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14,066	5,239	8,827	0
권역 단위 종합 개발	1,718	638	1,080	0
마을단위경제(체험소득)	193	124	69	0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	135	61	74	0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121	80	41	0
시 군 창의	608	493	115	0
취약지구 개조(궁항지구)	1,135	49	1,086	0
거창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621		1,621	0

심 사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스피트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등 총 14건의 계속사업비 이월 내역은 모두 타당함.

6) 예비비 지출

(단위 : 백만원)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합 계			182	180	0	2
기획예산 담당관	규제개혁추진	규제개혁 및 소송관리	22	22	0	0
농업기술 센터	과수산업생산 기반조성	과수 품질 향상	75	75	0	0
농업기술 센터	고식미 생산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85	83		2

심 사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 및 소송관리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계약 소송관련 변호사 착수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임.
- 농업기술센터 과수 품질 향상 사업은 태풍 링링 피해에 따른 낙과 및 저품위 사과 수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업재해 재난 지원금은 태풍 타파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농업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한 사업으로 재정집행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로 예비비 집행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지만

- 긴급 목적 달성을 위해 편성된 예비비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7) 다음연도 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이월액	비 고
계	257		98,260	
명 시 이 월	119	148,719	51,974	명시,사고이월 중복되는 사업있음
사 고 이 월	146	166,576	31,319	
계속비이월	26	21,655	14,967	

심 사 의 견

- 예산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사업기간 부족, 사전절차 이행,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위치 미확정,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됨.
- 이월 사유와 이월 금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사례로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집행을 위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함.

8) 기금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㉑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㉒=㉑+㉓)
		계(㉒)=㉑-㉔	조 성 액(㉑)	사 용 액(㉔)	
계(8종)	13,133	160,243	161,016	772	173,377
식 품 진 흥 기 금	84	63	79	16	148
중소기업육성기금	6,547	-7	107	114	6,540
사 회 복 지 기 금	3,489	67	132	64	3,556
재 난 관 리 기 금	1,083	-2	18	20	1,081
아림예술제진흥기금	501	1	7	6	500
옥외광고정비기금	283	25	26	1	309
체 육 진 흥 기 금	1,146	96	647	551	1,243
재정안정화 적립금		160,000	160,000		160,000

심 사 의 견

- 2019년 말 현재 기금은 8종으로 조성액은 173,377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61,016백만원이고, 사용액은 772백만원으로 160,243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경기변동에 따르는 유동적인 세입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이 큰 폭으로 증대 시 적립하고, 하락할 때 기금을 운용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입감소로 인한 부족재원 충당,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비 및 대규모 건설사업의 재원으로 활용가능한바

- 경상일반 세입재원 중 보통교부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의 지속적인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예비비로 편성, 순환 반복하였기에 올해는 여유 재원 1,600억원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한 때에 이를 충당하여 사용하고 연도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군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검토됨.

9) 채권액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잔 액
합 계		3,883,629	276,362	622,357	3,537,634
일반 회계	소 계	3,648,827	234,923	367,203	3,516,547
	학자대여금	3,487,827		326,310	3,161,517
	회 원 권	133,000		0	130,000
	주택융자금	28,000	23,417	0	51,417
	(저소득주거생활 안정자금)	0	211,506	40,893	170,613
기금	사회복지기금	234,802	41,439	255,154	21,087

※ 채권액은 원금 + 이자 기준임.

심 사 의 견

- 전년도 말 잔액은 3,883,629천원으로 당해 연도에 276,362천원이 발생하고, 622,357천원이 소멸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3,537,634천원임.

- 채권 종류별 현황을 보면 기금채권 234,802천원, 보증금채권 133,000천원, 융자금 채권 3,386,547천원으로 보증금채권은 회원권이고, 융자금채권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및 저소득계층 주택 임대보증금이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임.

10) 채무액 결산

- 거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14년도부터 채무 제로화를 달성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0원임.

11) 보조금 결산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	138,753,984 (89,863,551)	138,106,975 (89,903,284)	124,819,536 (70,394,448)	9,190,084 (15,518,631)	4,097,355 (3,990,205)	
일반회계	134,400,912 (86,942,781)	133,753,903 (86,982,514)	121,123,593 (68,937,005)	8,618,533 (14,110,801)	4,011,777 (3,934,708)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30,000 -	30,000 -	30,000 -	- -	- -
	의료보호기금	242,431 -	242,431 -	193,027 -	-	49,404 -
	산업단지조성사업	120,000 (2,918,832)	120,000 (2,918,832)	105,076 (1,456,245)	(1,407,830)	14,924 (54,757)
	수질개선	3,960,641 (1,938)	3,960,641 (1,938)	3,367,840 (1,198)	571,551 -	21,250 (740)

※ 군비부담액은 89,903,284천원으로 총 보조사업비(수령액)에 대하여 65.09%에 해당함

※ ()내서는 군비 부담액임.

심 사 의 견

- 2019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138,106,975천원으로 예산액 138,753,981천원 대비 99.5%이고, 집행액은 124,819,536천원으로 예산액의90.37%이며, 9,190,084천원이 이월되었음
- 일반회계 준비부담액은 86,982,514천원으로 총 보조사업비(수령액)에 대비하여 62.9%에 해당됨.

전 체 심 사 의 견

-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임.
- 따라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다만 결산승인 과정에서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은 가능함.
- 또한 결산심사는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연도의 예산집행 및 편성을 위한 지도, 감독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 거창군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 경제활력 회복과 지역특색에 맞는 투자전략 수립, 재정운용 상황 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로
- 계속사업은 완공위주로 신규사업은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발전 전략과 지역 간 합리적 재원배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재정운용 투명성과 재정관리의 실효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음.
- 2019년도 총 세입액은 879,262백만원, 총 세출액은 673,600백만원으로 잉여금은 205,662백만원임. 세입대비 23.4%가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은 재정 계획과 재원 배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할 것임.
- 총 세입은 879,26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8,752백만원(15.6%)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288,873백만원(36.1%)이고, 보조금 159,426백만원(19.9%), 조정교부금 24,684백만원(3.1%), 지방세는 26,823백만원 (3.4%), 세외수입은 21,789백만원(2.7%)으로 우리군 재정은 자체재원(6.1%)보다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59.1%)의 비율이 높은 편임.
- 세출은 673,60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0,957백만원(48.8%)이 증가하였으며,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190,118,398천원, 사회복지

110,825,268천원, 농림해양수산 93,017,174천원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일반 공공행정으로 재정안정화 적립금 160,000,000천원이 적립되어 460.4%가 증가 되었으며, 보전은 전년대비 1.2%가 감소하였다.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서는 계획된 사업이나 시책들을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잉여예산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더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특정 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말 현재 기금 조성액으로 173,376,524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61,015,377천원이고, 사용액은 772,368천원으로 160,243,009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최근 5년간 기금조성에 비해 기금사용의 증가율이 약 14.8%p 낮은 편이며, 증가원인은 재정안정화 기금이 적립된 것이다.
-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추진중에 있는 사업중 빼제 레포츠파크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위치적 제약과 국외업체의 자재와 기술을 도입하여 시설을 설치한다는 어려움이 있어보이므로 마운틴

코스트 제작 설치에 대하여 협의가 불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며, 시행 가능한 부분은 협의 완료하여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는 등 대책이 필요해 보이며,

-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중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505,514천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로서 징수방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4. 토론요지 : 해당없음

5.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